

주민의견조사 실시 안내문

① 조사개요

- 조사기간: 2026. 2.13.(금) ~ 3.20.(금)
- 조사대상: 행당동 300-1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 738명
- 조사사유: '25. 12. 24.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된 결과가 우리구에 통보되어, 구역계 조정(안)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함.

[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조건사항]

- 반대동의율 최소화 및 진입도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구역계 조정(안)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것(선정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)
- 조건사항 이행 및 조치결과에 대해 서울시 주관부서에 제출·관련부서 협의 후 신속통합기획 수립 추진여부 결정(필요시 후보지 선정위원회 자문)

- 조사내용: 구역계(안) 조정에 대한 찬·반 의견조사
- 조사방법: 주민의견조사서(제출서류 참조) 작성 후 조사기간 내 구청 제출

[유의사항]

- 후보지 입안과정에 동의여부 제출한 자가 **주민의견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**
 - 찬성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, '**재개발 사업 찬성**'으로 같음
 - 반대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, '**재개발 사업 반대**'으로 같음
 - 후보지 입안과정에서 **제출된 의견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주민의견 조사서에 의견을 표하여 제출**하시길 바랍니다.
- ※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입안동의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최종 의견으로 간주할 것이오니,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(1) 제출서류(① ~ ③ 필수 제출, ④ 필요시 작성 제출)

연번	제출 서류명	참고서식
①	주민의견조사서 작성	[별첨1]
②	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, 자동차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※ 신분증명서 복사는 성동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이용 가능	
③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[별첨2]
④	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공동소유에 한하여 제출)	[별첨3]

※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

(2) 제출방법

- 우편제출: 우편 봉투(수신처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)에 제출서류(①~④) 동봉 후 제출
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)
- 직접제출: 제출서류(①~④)를 지참하여 업무시간(09:00 ~ 18:00)내 성동구청 주거정비과로 제출

② 기타 안내사항

- 주민의견조사서 등 서식은 우리 구 홈페이지(열린성동-성동소식-새소식)에 게시할 예정으로, 첨부된 서식 사용 가능
-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의견조사 종료일 기준 국공유지를 포함하며,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에 따름
- 의견 조사서 등은 조사기간 내(업무시간 내) 제출(우편의 경우 도착분)에 한하여 인정됨
- 제출서류 미비된 경우(신분증 누락 등) 혹은 제출서류 상 작성내역 미비된 경우(지장날인, 서명 등 누락) 해당 서류는 동의율 산정에 제외됨
- 조사 결과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제출 예정이며, 향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임
- 기타, 문의사항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86-6562)

③ 후보지 구역계 조정(안)



<QR코드>



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주민의견조사 안내문과 서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<성동구청 홈페이지 주민의견조사 서식 받으시는 곳>

성동구청 홈페이지 → 행정정보 → 정보공개 → 행정자료실 → ‘주민의견조사’ 검색

4 주민의견조사서 작성방법(샘플)

성동구 행당동 300-1번지 일대 구역제(안) 조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민의견조사서

1. 소유자 인적사항

성명	홍길동	생년월일	1980. 1. 1.
주소	행당동 300-00	전화번호	010-1234-5678

2. 소유권 현황

권리내역	토지	소재지(공유여부)	면적(m ²)
		(계 1 필지)	500m ²
		행당동 300-00()	500m ²
		()	
	건축물	소재지(허가여부)	동수
		행당동 300-00()	1
	()		
지상권 (건축물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)	설정토지	지상권의 내용	
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행당동 300-1번지 일대의 조건이행을 위해 구역제 조정에 따른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토지등소유자의견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찬성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반대
	()	()
※ 입안제안 찬성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, 본 주민의견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‘재개발사업 찬성’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		
※ 입안제안 반대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, 본 주민의견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‘재개발사업 반대’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		
※ 후보지 입안과정에서 기 제출된 의견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주민의견 조사서에 변경된 의견을 표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		
※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입안동의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최종 의견으로 간주할 것 이오니,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		
※ 재개발 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‘주택재개발 사업 찬성’에,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‘주택재개발 사업 반대’에, 2개 항목 중 1개의 항목에만 “○” 표시하십시오.		

2025년 9월 1일

토지등소유자(성명) : 홍길동 (지장 날인)

※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,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(이강 기타 의장은 불인장)
다만, 법인이나 장거

자필서명과 지장 필수

성동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

1. 신분증명서 사본 1부 (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)
※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 등
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(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)

3.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(공동소유일 경우) *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